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강 성 조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Ⅰ. 서 언

올해는 새정부가 5년동안 정책을 펴가게 되는 그 첫 해이다. 최근 각계각층에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이야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새 정부의 지방재정운영의 중심어는 경험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자립적 지역경제'와 '실천적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의 큰 틀 아래서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발전적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신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영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새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세제도 개편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적정한 재정지출 수준을 확보하는 것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비롯한 도서 · 오지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모두의 진지

한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새정부의 국정철학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그 '비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의 대폭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조정[1]되고 사회문화 ·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은 이러한 재정분권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켜 실용과 효율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전략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08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적 이전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중 일정율을 법정화하여[2]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지정 없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자치단체는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부처가 분산추진 하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광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표1〉참조).

1)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변화 : 내국세 총액의 15%(2000년) → 19.13%(2005년) → 19.24%(2006년)
2) 2006년도부터는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13%에서 19.24%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표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 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정책사업 지원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재 원	내국세의 19.24%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주세 100% 과밀부담금 개발지역훼손부담금 농특세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원성격	일반재원	보조목적사업의 용도에 한정	사업별 용도에 한정

Ⅲ. 2008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

1.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2008년도 국세의 총액은 165조 5,623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가 133조 1,709억원, 부동산교부세[3]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2조 8,695억원, 목적세와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4]가 25조 1,888억원이며, 관세는 7조 2,026억원이다(〈표2〉참조).

〈표2〉 2008 국세 관련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교부세재원	기 타
計	1,655,623	1,331,709	323,914
소 득 세	380,152	380,152	
법 인 세	362,841	362,841	
상 속 증 여 세	39,510	39,510	
부 가 가 치 세	439,290	439,290	
개 별 소 비 세	45,964	45,964	
증 권 거 래 세	31,667	31,667	
인 지 세	6,279	6,279	
기 타 내 국 세	26,006	26,006	
종 합 부 동 산 세	28,695		28,695
주 세	25,309		25,309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20,355		120,355
교 육 세	41,169		41,169
농 특 세	36,360		36,360
관 세	72,026		72,026

이 중 내국세 133조 1,709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25조 7,797억원이 2008년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며[5], 이는 2007년도 22조 6,242억원에 비해 13.9% 증가된 규모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22조 7,234억원)과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8,5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액은 23조 5,734억원으로서 2007년도 21조 3,162억원에 비해 10.6% 증가한 규모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2008년도 재원규모는 9,468억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존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0.94%에 해당하는 1조 2,595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2007년 1조 8,892억원에서 2008년 3조 1,770억원으로 68.2% 증가하였다(〈표3〉참조).

〈표3〉 200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배분비율	2007 예산(정산반영)	2008예산	증감 현황	
계		23,307,694,485	25,779,696,000	2,472,001,515	10.6%
보통교부세	96%+별도정액	21,316,202,000	23,573,381,000	2,257,179,000	10.6%
재정부족보전분	96%	20,466,202,000	22,723,381,000	2,257,179,000	11.0%
도로보전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	0.0%
특별교부세	4%	852,758,975	946,808,475	94,049,500	11.0%
분권교부세	내국세 0.94%	1,138,733,510	1,259,506,525	120,773,015	10.6%
* 부동산교부세	종부세총액	1,889,206,000	3,177,011,000	1,287,805,000	68.2%

3) 2006년부터 신설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지방교부세 법정율 19.24%와는 별도의 재원)하여 자치단체의 보유세 ·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잔여재원(균형재원)은 지역균형재원으로 시 · 군 ·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지방교부세법 제3 ·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4)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특세

5)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1항 : 교부세(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다)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과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2.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가.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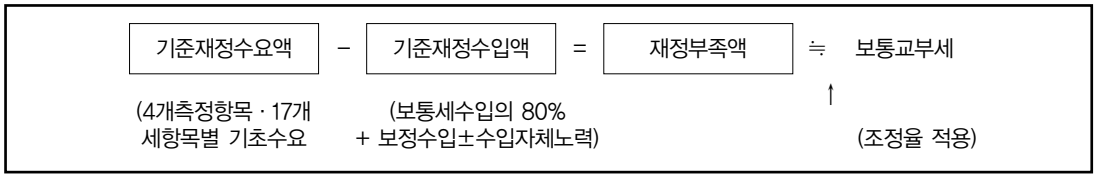

2008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64조 5,250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40조 8,899억원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은 24조 7,153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08년도 조정율(89.2%)[6]을 곱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이 된다(〈표4〉참조).

2008년도 보통교부세 22조 7,234억원의(자치단체 재정부족 보전분) 배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는 평균 2,324억원, 강원, 충북 등 8개도는 평균 5,348억원이 지원되었다.

75개 市중에서 수원, 안양, 안산, 성남,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시가 재정여건이 좋아 불교부단체가 되었으며 나머지 67개 市는 평균 1,190억원, 86개 郡은 평균 1,05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조정율(%) =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 100

〈표4〉 2008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計	463,583 (645,249)	216,431 (408,899)	247,152 (236,350)	227,234
서 울	(105,988)	(106,713)	(?725)	–
광역시	95,123 (95,123)	79,456 (79,456)	15,667 (15,667)	13,973
도 분	81,834 (128,306)	41,485 (89,240)	40,349 (39,066)	42,801
시 분	163,338 (192,544)	73,911 (111,911)	89,427 (80,633)	79,753
군 분	123,288	21,579	101,709	90,707

※ ( )내는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나.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방예산의 사업별예산제 도입에 따라 측정항목을 기존의 9개분야 26개세항목에서 4개분야 17개세항목으로 합리적으로 단순화하여 인구, 면적 등 기본통계에 의한 수요산정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첫째,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등 행정환경 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문화 · 복지분야의 수요 비중을 확대했고, 둘째, FTA 체결과 관련한 농수축산분야와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를 확대 반영 또는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셋째, 자치단체가 세출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세수확보 등 재원확보에 있어 자체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였다.

1)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단순화 · 합리화

올해부터 도입된 자치단체의 사업별예산제와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성격이 유사한 항목을 조정하여 기존의 9개분야 26개세항목을 4개분야 7개세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산정했다(<표5>참조).

《주요 변경 사항》

- 청소비+환경공해비+공원녹지비+상수도비 ⇒ 환경보호비
- 농업비+수산업비+임업비 ⇒ 농림수산비
- 도시계획비+하천비+지역개발비 ⇒ 지역개발비
- 홍보 및 문화체육비+관광진흥비 ⇒ 문화관광비
- 지역정보화비+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아동복지비 ⇒ 영유아 · 청소년 복지비

〈표5〉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조정현황

개 선 전 (9개항 26개 세항)	개 선 후 (4개항 17개 세항)

측정항목	
1. 일반행정비	① 인 건 비
	② 일 반 관 리 비
2. 홍보 및 문화체육비	③ 홍보및문화체육비
3. 보건 및 생활환경 개 선 비	④ 보 건 위 생 비
	⑤ 청 소 비
	⑥ 환 경 공 해 비
	⑦ 공 원 녹 지 비
4. 사회보장비	⑧ 일반사회복지비
	⑨ 노 인 복 지 비
	⑩ 아 동 복 지 비
	⑪ 장 애 인 복 지 비
	⑫ 기초생활보장비
5. 지역사회 개 발 비	⑬ 도 시 계 획 비
	⑭ 지 역 개 발 비
	⑮ 지 역 정 보 화 비
	⑯ 교 통 관 리 비
6. 농수산 개발비	⑰ 농 업 비
	⑱ 수 산 업 비
	⑲ 임 업 비
7. 지역경제 개 발 비	⑳ 지 역 경 제 비
	㉑ 관 광 진 흥 비
8. 국토자원 보 전 개 발 비	㉒ 상 수 도 비
	㉓ 도 로 개 량 비
	㉔ 도 로 유 지 비
	㉕ 하 천 비
9. 안전관리비	㉖ 안 전 관 리 비

측정항목	
1. 일반행정비	① 인 건 비
	② 일 반 관 리 비
	③ 안 전 관 리 비
2. 문화환경비	④ 문 화 관 광 비
	⑤ 환 경 보 호 비
	⑥ 보 건 비
3. 사회복지비	⑦ 기 초 생 활 보 장 비
	⑧ 노 인 복 지 비
	⑨ 영유아청소년복지비
	⑩ 장 애 인 복 지 비
	⑪ 일 반 사 회 복 지 비
4. 경제개발비	⑫ 농 림 수 산 비
	⑬ 지 역 경 제 비
	⑭ 도 로 개 량 비
	⑮ 도 로 유 지 비
	⑯ 교 통 관 리 비
	⑰ 지 역 개 발 비

② 저출산 · 고령화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 반영 강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외계층 ·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교부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보통교부세의 분야별 수요산정 항목 중 사회문화 · 복지부문의 비중을 '07년도 36%(18조원)에서' 08년도 40%(22.1조원)로 4%P(4.1조원)를 상향 조정하여 사회문화 · 복지부문의 투자비중이 높은 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회문화 · 복지분야 수요비중이 높은 목포시의 경우 종전방식에 비해 40억원, 완주군의 경우 27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되었다(〈표6〉참조).

〈표6〉 사회문화 · 복지 비중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감단체 예시

(단위 : %, 억원)

구 분	종전방식				개선방식				교부세 증 감	%
	기초수요비중			교부세	기초수요비중			교부세		
	일반 행정	사회 문화	지역 개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지역 개발			
市 평균	34	37	29		34	40	26			
목포시	39	41	20	1,159	38	45	17	1,199	40	3.5
상주시	36	29	35	2,090	36	32	32	2,041	△49	△2.3
郡 평균	35	31	34		35	35	30			
완주군	34	33	33	1,299	33	38	29	1,310	11	0.9
군위군	38	25	37	832	38	29	33	822	△10	△1.2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사회복지비 항목에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외에 국적취득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도 추가하여 수요를 산정하였으며, 영유아 ·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비 수요에 대해 각각 영유아 ·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동종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 그 비율만큼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추진을 유도하였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수요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노령인구비중이 20%이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수요산정액의 50%를 추가 반영토록 하는 등 농어촌의 노령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한편,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저소득층 입주에 따른 복지수요증가 등의 자치단체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반사회복지비 항목에 임대주택관련 수요를 보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 복지분야 투자확대를 유도하였다(〈표7〉참조).

〈표7〉 '08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반영통계	수 요 산 정 액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합 계		1,219,613 (100%)	90,008 (7.4%)	288,690 (23.7%)	258,320 (21.2%)	373,020 (30.6%)	209,575 (17.1%)
기초생활보장비	수급권자비율	208,232	10,897	43,613	61,304	58,562	33,856
노인복지비	노인인구비율 (초고령자치단체)	426,660 (36,773)	27,875	36,663	144,038	114,773 (7,050)	103,311 (38,579)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영유아청소년비율 가정위탁보호아동수	414,905	37,476	184,300	-	142,412	50,717
장애인 복지비	장애인비율	116,032	7,599	15,782	36,911	38,768	16,972
일반사회복지비	외국인 등 (임대주택)	53,484 (31,660)	6,161 (2,161)	8,332 (5,453)	16,067 (10,213)	18,205 (12,069)	4,719 (1,764)

③ FTA체결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수요를 보강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수요에 경지면적을 측정단위로 하는 '경지관련 수요'와 어장 및 갯벌면적을 측정단위로 하는 '수산관련 수요', 그리고 주요 가축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축산관련 수요'를 신설하여 추가로 수요를 보정하였다(〈표8〉참조).

〈표8〉 농수축산분야 지역균형수요 반영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수요반영액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계	7,707	156	553	2,072	2,213	2,713
경지수요	4,151	104	281	1,123	1,181	1,462
수산수요	1,032	0	94	271	216	451
축산수요	2,524	52	178	678	816	800

④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 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소재 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손실 및 개발기회 상실 등을 보전키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와의 차액에 대해 기존 20%의 비율로 수요를 산정 · 보정해주던 것을 30%로 확대 반영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자치단체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표9〉참조).

〈표9〉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요 확대반영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요 산 정 액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당 초(20%)	91,065	34,096	14,611	16,758	23,201	2,399
변 경(30%)	136,592	51,144	21,917	25,141	34,799	3,591
증 감	45,527	17,048	7,306	8,383	11,598	1,192

⑤ 군인 등 보정인구에 대한 수요 대폭 확대

군인으로 인한 간접적인 행정수요 유발, 지역개발의 제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반영해 오던 군인 등 보정인구관련 수요에 대해 측정항목 단순화를 통해 기존 5개항목(환경공해비, 상하수도비, 도로유지비, 도시계획비, 지역경제비)에서 9개항목(종전의 청소비, 공원녹지비, 지역개발비 추가)으로 확대 반영함으로써 대폭적인 수요 확대를 꾀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자치단체와 군부대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시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군인관련 수요 보정 : ('07) 823억원 ⇒ ('08) 1,628억원 (증 805억원, 97.9%)

2) 기준재정수입의 합리적 산정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추계 시 보통세 중 주민세에 대해 종전의 기타보통세에 통합하여 연평균 증가율 방식을 사용하던 것을 주민세의 소득할 부분이 다른 세목과 달리 경기변동에 의한 세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일반 보통세와 같이 회귀방정식 방식으로 추계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 강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 등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반영규모를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촉진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노력을 반영하는 『경상경비 절감운영』노력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 반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읍면동 통합을 가속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읍면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존 통합후 1년에 대해 통합전의 읍면동 운영비 100%를 수요에 반영해 주던 것을 통합후 5년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총 300%를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문화 · 복지분야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문화 · 복지분야 예산비중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85개 자치단체에 대해 493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해 주었다.

이렇게 반영된 세출절감 등 재정수요부문의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액은 총 1,657억원으로 개선전의 인센티브 반영액 1,278억원에 비해 379억원이 늘어나 29.7%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확충을 위한 재정수입부문의 인센티브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경상수입의 이자수입 등 일부항목은 급격한 재원변동으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인센티브가 발생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경상세외수입확충에 대한 인세티브 산정 방식을 기존 단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던 것을 기준년도 3년평균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3.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상 발생하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법개정(2004년도)에 따라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수요항목이 당초 시책사업 · 지역현안 · 재해대책 · 지역개발 · 특정현안의 5개항목에서 지역현안 · 재해대책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재원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조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표10〉참조).

〈표10〉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단위 : 억원)

구 분	비 율	규 모	비 고
총 계		9,468	'07년 8,268억원
지역현안수요	50%	4,734	• 전국체전준비 등 전국행사 지원 • 자치단체별 지역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	50%	4,734	• 수해 · 태풍 등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사업 재원보전
우수단체 재정지원	재해대책 수요잉여분		• 자치단체 종합평가 • 분쟁해결 등 우수 자치단체 • 우수 행정 · 재정실적 자치단체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가. 지역현안수요

지역현안수요는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관련수요, 행정구역개편수요, 재정결함보전수요 등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되 교부대상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산정대상으로 항목별 지방비소요액에 대하여 일정분을 교부하게 된다.

2007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자치단체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신설하였다. 2008년에도 전국체전, 지역의 긴급한 현안수요 등에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교부세 신청 시 접수사항을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replay-mail System),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나.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다. 재해대책수요의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크게 항구복구비와 응급복구비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항구복구비의 경우 재난발생에 따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과중한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복구비 중 지방비소요액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부담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방비부담분의 일부를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응급복구비는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시설물 응급복구,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신속히 교부하는 것으로, 2008년도 연초에 서해안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장비 구입 및 타르제거 선박 유류대 등에 응급복구비를 이미 지원했고, 향후 수해 등 재난 발생할 경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 · 재정 우수 운용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단체, 재정분석진단 우수 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의 우수사례,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사례의 경우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지방행정혁신평가, 국정시책합동평가, 재정분석평가, 행정혁신우수단체, 지방정보화, 상생협력 · 갈등해결우수단체 평가 등 21개 사업에 대해 99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국정통합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에는 성과수요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센티브 대상사업 및 평가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국가중요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 분권교부세 운영방향

가. 분권교부세 제도개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149개 사업(9,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05년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05년 분권교부세 도입당시 소요재원은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토록 하였으나, 노인 · 장애인 · 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등 사회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복지 불균형의 발생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11% 상향조정하여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인상하였고 인상된 전액(1,178억원)을 사회복지수요에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8년의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규모는 1조 2,595억원으로 2007년 1조 1,387억원에 비해 10.6% 늘어났다(〈표11〉참조).

〈표11〉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지원 현황

구 분	분권교부세 총액	사회복지분야	비 중(%)
2005년	8,454억원	5,310억원	62.8%
2006년	1조 65억원	6,713억원	66.7%
2007년	1조 1,385억원	7,835억원	68.8%
2008년	1조 2,595억원	8,792억원	69.8%

나. 분권교부세 산정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관련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 기초자료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확인 · 검증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1) 경상적수요 산정

경상적수요는 경로당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92개 사업으로써 총 5,902억원 규모이며 전체 분권교부세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산정방법은 산정항목별 자치단체 예산편성 현황 분석자료와 지방이양사업 관련통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후,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2) 비경상적수요 산정

비경상적수요는 노인 · 장애인 · 정신요양시설운영, 버스운송재정지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등 57개 사업으로써 총 6,693억원 규모이며 전체 분권교부세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상적수요는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일반수요는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35개사업 313억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특정수요는 22개 사업 6,380억원으로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계획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다. 분권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08년 분권교부세 산정시는 대상사업의 사업성격 ·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요별 대상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비에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수는 적용통계에서 제외하였다.

※ '07년 경상적수요 80개, 비경상적수요 69개(일반45, 특정24)

⇒ '08년 경상적수요 92개, 비경상적수요 57개(일반35, 특정22)

또한, 수요별 대상사업의 조정에 따라 일반수요의 도본청과 시 · 군의 배분비율 및 분야별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산정의 객관성 ·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 도 본청과 시 · 군분 배분비율 : 당초(본청 3.5%, 시 · 군 66.5%)

⇒ 조정(본청 5%, 시 · 군 65%)

구 분	총인구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재정력
'07	40%	25%	5%	30%
'08	45%	20%	5%	30%

한편, '08년 분권교부세 산정시에는 자치단체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 장애인 ·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에 지난해보다 957억원이 증가한 8,792억원을 배정했고, 서민의 발이 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 · 공영버스 지원 3개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39억원이 증가한 1,450억원을 지원했다.

5. 부동산교부세 운영방향

가. 부동산교부세 제도개요

부동산교부세는 2004년말 종전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징수세액 전액을 부동산교부금으로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전액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표12〉참조).

〈표12〉 연도별 종부세 및 자치단체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종부세 규 모	예산액	배 분 액			종부세 징수액
			소 계	세수감소분	균형재원	
2005	6,518	6,513	3,930	3,930	–	3,930
2006	17,273	10,200	10,200	8,667	1,533	13,275
2007	28,560	18,892	18,892	9,971	8,921	

나. 부동산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1) 사회복지 · 지역교육 항목 신설 및 비중조정

종부세 균형재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뿐 아니라, 실질적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 및 비중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복지와 교육수요가 적은 시 · 군의 농촌지역 등에 손해가 없도록 배분지표 및 지표별 비중을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였다.

기 존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
개 선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

2) 제주특별자치도 교부기준 보완

현행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배분은 시 · 군 · 구별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 · 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시 · 군이 폐지('06.7.1)되었더라도 재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원의 일정비율(1.8%)을 산정기준으로 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재산세 감소분 산정에도 특별법 취지를 고려하고 교부기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교부금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4개 시 · 군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지방교부세법령을 개정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정산분 교부기준 신설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1항에 의거 부동산교부세는 세입세출예산에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계상하고 법제2항에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정산액에 대한 교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다.

※ '08년 예산에 편성된 '06년 정산분 3,075억원은 '06년 교부기준으로 배분

4)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산정기준 보완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08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에 포함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재산세 감소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5) 거래세 부과액 산정기간 조정

광역시 · 도의 거래세 감소분은 부과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고 매년 징수실적으로 결산하여 정산하고 있어 사전 거래세 부과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지자체의 취 · 등록세 부과액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부과액 산정기간을 1~8월에서 1~10월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거래관련 지방세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였다.

6.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방향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태만을 행한 경우에 그 결과를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감액),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감액적용대상 및 감액기준(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 지방채미승인 사업예산 지출(지방재정법 제11조위반) – 지출금액의 10/100이내
- 재정 투 · 융자 미심사 사업예산 지출(지방재정법 제37조위반) – 지출금액의 10/100이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경비지출(지방재정법 제38조위반)–지출금액이내
- 감사결과 위법한 경비의 과다지출 · 수입 징수태만 – 지출금액 · 미징수금액이내

※ '02년부터 시행(02.1.1이후의 위법한 예산편성 지출행위 대상)

이러한 교부세 감액제의 운영은 재정관련 부서 · 감사부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지출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한 행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감액대상 및 금액은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감액 금액은 익년도 당해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며, 감액재원은 여타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전재원으로 활용된다. 2008년도에는 재정 투 · 융자심사 미이행, 징수태만 및 과다 지출 등 50건(47개 자치단체)에 269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했다.

Ⅳ. 2008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

1. 국고보조금제도 의의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부담금과 교부금」을, 제20조에서는「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협의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제도 운영현황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참여정부 출범 초창기인 '04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 축소, 소액 분산투자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정비계획 수립 · 확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였다.('05.1.1 시행) 우선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 등을 관련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했고, 지역균형개발관련 농림 · 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7]로 이관하는 대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했다.

7) 각 중앙부처가 분산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균특회계 설치('05. 1. 1) 균특회계 재원은 ① 균형발전 관련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3.7조원) ②지방양여금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0.4조원) ③국가직접 사업(개발촉진지구 등) ④ 민간출연금사업 등을 이관 설치.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과(80%)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20%) 구성

이렇게 하여 정비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시책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재정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 ·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더욱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매칭비용의 부담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공감하여 지난해 국가보조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부처간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여 우선 규모가 큰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 등의 2개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획예산처)는 저출산 · 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 ·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매력있는 생활여건을 조성코자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총 사업 977건 24조 9,577억원 규모에 일반회계 441건 17조 7,73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75건 5조9,134억원, 기타 각종 기금 161건 1조 2,713억원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사업건수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208건에 3조 5,579억으로 가장 많고 규모로는 보건복지부가 140건에 9조 9,323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3. 국고보조금제도 발전방향

지난해 사회투자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를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제도화하는 등 재원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입장에선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국고 차등보조를 다른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역차별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국고보조사업에 관련한 현행 법령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율과 광역-기초간 부담비율 등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사업의 유형별로 기준부담율 혹은 광역-기초간의 부담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효율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재정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복보조, 보조규모의 영세성, 지출목적의 지나친 세분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정리하는 등 보조금 대상사업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 (향후 제도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향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법정율 19.24%의 보통 · 특별 · 분권교부세와 별도의 부동산교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관심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발전적으로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코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방향을 보면 크게 교부세 틀(Hardware)의 변경과 세부 배분방식(Software)의 개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하드웨어(Hardware)적 개편방향

먼저 교부세 틀의 재편면에서 보면, ① 전체적으로 교부세규모를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P 이상 인상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② 특별교부세 배분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재해대책수요의 잔여분으로 규모가 불분명한 인센티브재원을 일정규모로 명확히 하여 단

기적으로는 성과수요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통합하여 성과교부세를 신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하며, ③ 새롭게 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하여 부처별 · 회계별로 분산된 재원의 통합을 통해 포괄지원 방식으로 지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차원의 SOC사업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④ 2010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를 분석 · 개편하여 자치단체간 복지균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적인 수요보전은 보통교부세 등으로 분리하여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한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나.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선방향

지방교부세의 틀을 바꾸는 하드웨어(Hardware)적 개편과는 별개로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의 형평화 및 안정화 등 지방교부세 본연의 역할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배분기준의 객관성 · 합리성을 높이고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를 100%반영하되 비경상적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요를 분석 · 반영하는 방안, 수요 측정항목을 더욱 단순화해서 주요 측정단위(통계) 의 수요구성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수요와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수요도 더욱 확대 반영되도록 수요보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FTA 체결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별시 및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 · 교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불교부단체에는 영향력이 없으며,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기본원리를 훼손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어 인센티브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경우 재해대책수요에 사용하고 남은 재원을 활용해야 하므로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의 새로운 항목 발굴과 반영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센티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쟁을 강화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해 가고자 한다.

한편, 분권교부세의 경우 특정수요의 경상적수요로 전환, 경상적 수요 사업의 적용통계 및 기준을 개선하여 산정의 객관성 ·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안정적인 정착에 더욱 노력해 할 것이다.

또한, 분권교부세 제도가 2009년까지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재원보전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다.

부동산교부세는 현행 거래세 감소분 보전방식에 대한 시 · 도간의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사회복지 등 새로운 수요의 반영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등 자치단체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증가와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교부기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

2005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를 통해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던 균형발전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실제 운용결과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정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포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형평과 효율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균특회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소요재원의 조달, 소관부처나 해당 지자체의 균특회계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는 행정구역의 틀을 뛰어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풀고 광역경제권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새로운 지역별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행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되었다.